

[대학원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]

[시행일 2026.2.23.]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백석대학교 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 라 한다) 「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」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장학금 지급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) 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본 대학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백석장학금: 본 대학의 설립목적과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 - 가. 선발기준: 본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재학생으로서 개혁주의생명신학실천원 보조연구원 또는 대학원 홍보기자단으로 선발된 자
 - 나. 지급액: 박사과정 재학생 60만원, 석사과정 재학생 40만원 매월 지급
2. 성적장학금: 신학대학원 재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며, 해당 장학금은 다음 학기 등록금에 등록 반영한다.
 - 가.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하며, 그 기준은 <별표 1>과 같다.
 - 나. 동점자 처리기준: 평점평균/취득학점/산술평균/생년월일(연장자 우선)의 순으로 지급한다.
 - 다. 제외대상 1) 해당학기 6학차 재학생
2) 해당학기 15학점 미만 신청한 자
3) 해당학기 수강과목에서 1과목 이상을 철회한 자
4) 지급대상 학기에 휴학한 자(단,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는 지급)
3. 근로봉사장학금: 대학원 관련 부서에서 근로 봉사한 재학생에게 지급하며, 주당 최대 3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. 시간당 지급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다.
 - 가. 선발기준: 해당 부서(교학처, 교목실, 총무처, 도서관, 백석상담센터, 개혁주의생명신학실천원, 시설관리처, 백석생활관(서울), 백석ABA센터)에서 자체 선발하고 복무협약서를 작성한다.
 - 나. 지급액: 해당 월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비용을 지급하며 익월 5일에 지급한다.
 - 다. 관리: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근로봉사학생의 근로봉사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관리한다.
4. 봉사장학금: 대학원 원우들의 제반 활동 등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내역은 <별표 2>과 같다.
5. 외국인장학금: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(부모 모두 외국인)으로서 학업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
 - 가. 외국인(부모 모두 외국인)
 - 1) 제출서류: 외국인등록증,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, 보험가입증명서
 - 2) 지급액: <별표 3>과 같다.
 - 나. 북한이탈주민
 - 1) 제출서류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- 2) 지급액: 학기별 수업료의 100%
6. 교직원장학금: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및 백석문화대학교,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(백석예술대학교) 임원 및 교직원(강사 제외)으로서 수업료(입학금 제외)의 50%를 지급한다. 다만, 수업연한까지 지급하며 재직기간 만료시에는 이후 1년까지만 지급한다.
- 가. 신청대상: 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 재학생
- 나. 제출서류: 재직증명서(1개월이내 발급) 또는 경력증명서
7. 나눔장학금: 경제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가. 나눔장학금(기초생활수급자)
- 제출서류(1개월이내 발급): 수급자증명서(본인만 해당)
 - 지급액: 100만원
- 나. 나눔장학금(차상위계층)(본인 또는 가족이 차상위계층인 경우)
- 제출서류(1개월이내 발급):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,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
 - 지급액: 50만원
8. 백석가족장학금: 2촌 이내의 혈연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원에 동시에 재학 중인 해당학생 모두 지급할 수 있고, 또는 본인이 본 대학 타 대학원에 동시 재학 중일 경우 이중 지급할 수 있다. 지급액은 50만원이다. 단 학기 중 어느 한명이라도 휴학하게 되면 해당학생 모두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.
9. 군목후보성장학금: 본 교단 소속의 군목후보생에 선발된 자에게는 신학대학원 입학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졸업시까지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재학 중 군목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.
10. 기부장학금: 외부에서 장학금 재원이 발생한 경우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- 가. 지정장학: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지급한다.
- 나. 일반장학: 장학(소)위원회 심의 후 지급한다.
11. 소망장학금
- 가. 대학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나 그 직계자녀 및 배우자로서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이거나 특별히 가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나. 특별히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학(소)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.
12. 경건실천장학금: 신학대학원에서 시행하는 경건실천훈련 모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가. 신청자격: 수업 전 기도회, 예배 출석 및 참여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선발하되 매학기 선발한다.
- 나. 지급액: 10만원
13. 본 교단 목회자장학금: 본 교단 소속 목회자로 실천신학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가. 제출서류: 소속증명서(백석총회 발급)
- 나. 지급액: 수업료의 40%(입학금 제외)



14. 목회자가족장학금: 본 교단 소속 목회자의 가족(자녀 또는 배우자, 본인포함)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가. 제출서류: 소속증명서(총회(백석)발급), 가족관계증명서
 - 나. 지급액: 50만원
15. 교육지도자장학금: 교장 및 교감(초, 중, 고), 국공립유치원 원장 및 원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
 - 가. 제출서류: 재직증명서(1개월이내 발급)
 - 나. 지급액: 50만원
16. 위탁장학금: 교육부나 국방부에서 대학원에 교육을 위탁한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.
 - 가. 위탁장학금(교육부): 교육부에서 위탁한 학생.
 - 나. 위탁장학금(국방부): 국방부에서 위탁한 학생.
 - 다. 지급액: 수업료의 50%(입학금 제외)
17. 기독교리더십장학금: 교회를 개척한 재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.
 - 가. 선발기준:
 - 신학대학원 재학생 중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고 있는 학생
 - 입교인 10인 이상인 교회(단, 농촌의 경우 면단위 이하 지역은 입교인 5명 이상)
 - 본 교단 노회에 청원 신청하여 승인된 교회(노회에서 ‘개척교회확인서’ 발급)
 - 나. 제출서류: 개척교회확인서(본교 양식), 교회주보(1개월 이내)
 - 다. 지급액: 100만원
18. 사랑장학금: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.
 - 가. 선발기준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- 나. 지급액: 150만원
 - 다. 제출서류: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
 - 라. 장애등급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(1~3급)을 가진 학생도 위의 기준을 따른다.
19. 백석리더십장학금: 본교 학부(평생교육원 포함), 대학원 및 백석교단 인준 교육기관 졸업(예정)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백석교단 인준 교육기관 졸업자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, 지급액은 <별표 4>와 같다.
20. 백석학원복음화리더십장학금: 백석학원(백석대, 백석문화대, 백석예술대) 복음화를 위해 신학대학원 진학하는 정규 교직원을 대상으로,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
 - 가. 백석학원복음화리더십장학금I: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및 백석문화대학교,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(백석예술대학교) 정규 교직원
 - 나. 백석학원복음화리더십장학금II: 백석대학교 정규 교직원
21. 선교리더십장학금: 본 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선교단체(전국 단위 학원선교 및 직장선교단체 등)의 간사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.
 - 가. 제출서류: 선교단체 재직증명서
 - 나. 장학금액: 수업료 30%
22. 학비감면지원장학금
 - 가. 목회자후보생장학금: 신학대학원 재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- 나. 타교단목회자장학금: 타 교단 소속 목회자로 실천신학대학원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다. 교육연구지원장학금: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자로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라. 보건복지지원장학금: 보건복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마. 상담지원장학금: 상담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자로서 상담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바. 문화예술지원장학금: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자로서 문화예술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사. 일반대학원지원장학금: 학문의 기초이론 및 고도의 학술이론 연구에 열정과 비전을 가진 자로서 일반대학원 재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아. 신설 대학원(전공) 장학금: 신입생 충원을 제고를 위해 대학원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학비감면 비율을 추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23. 공공리더십장학금: 보건복지대학원의 범죄심리학 또는 교정복지학 전공 재학생 중 해당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가. 제출서류: 재직증명서
- 나. 지급액: 수업료의 40%

제3조(지급기준 등 공지) 매 학기 초 장학금 지급 기준 등을 교내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
1. 장학생 선정 기준
2. 장학금 지급 기준액
3.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참고 자료 등

제4조(중복수혜 불가) 교내장학금의 수혜는 신청한 장학금 중 유리한 두 종류의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1. 예외사항: 근로봉사에 의한 봉사(근로봉사, 예배위원, 찬양단, 백석, 교수추천)장학금과 기부장학금,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2. 제2조 5호, 6호, 11호, 19호, 20호, 21호, 22호, 23호는 서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.
3. 성적장학과 사랑, 봉사(원우회, 대의원, 반대표)장학의 경우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신청자격 제한) 본 대학원 재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수업연한까지 신청할 수 있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자격의 상실 및 제한을 둘 수 있고 특별한 경우 심의·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.

1. <삭 제>
2. <삭 제>
3. 면학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칙 및 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
4. 선정된 장학생이 공고된 소정의 기간 내에 장학금 수혜 수속을 필하지 아니한 자
5. 소망장학금, 군목후보생장학금, 교직원장학금, 백석리더십장학금, 백석학원복음화장학금 대상자
중 2개 학기 연속 성적이 2.5이하인 자
6.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자
7. 휴학자 및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필하지 못한 자
8. 기타 장학금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자

제6조(장학금 조정) 제2조에서 정한 장학금은 해당학기 장학금 예산의 소진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.

제7조(장학금 환수) 장학금 과·오지급 또는 제적, 자퇴 등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<별표 5>의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한다.

부 칙
본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본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본 시행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본 시행세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본 시행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본 시행세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본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‘<별표 2> 봉사장학금’ 개정사항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<별표1> 신학대학원 성적장학금 지급기준

구분	지 급 액	인원 ^(*)		비고															
		1학기	2학기																
성적장학(A)	1등(전체 재학생): 수업료의 100%	1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></td> <th colspan="2">성적년도 학년 구분</th> </tr> <tr> <th>학년</th> <th>1학기</th> <th>2학기</th> </tr> <tr> <td>1</td> <td>1학차</td> <td>1-2학차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2-3학차</td> <td>3-4학차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4-5학차</td> <td>5학차^(**)</td> </tr> </table>		성적년도 학년 구분		학년	1학기	2학기	1	1학차	1-2학차	2	2-3학차	3-4학차	3	4-5학차	5학차 ^(**)
	성적년도 학년 구분																		
학년	1학기	2학기																	
1	1학차	1-2학차																	
2	2-3학차	3-4학차																	
3	4-5학차	5학차 ^(**)																	
성적장학(B)	2등(전체 재학생): 수업료의 90%	1																	
	3등(전체 재학생): 수업료의 80%	1																	
성적장학(C1)	주·야간 각 학년의 반별 1등: 1,500,000원	18	13																
성적장학(C2)	주·야간 각 학년의 반별 2등: 1,000,000원	18	13																
성적장학(C3)	주·야간 각 학년의 반별 3등: 800,000원	18	13																
합 계		57	42	*2) 성적년도 2학기의 5학차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성적장학(C1,C2,C3)는 주·야간, 수강반 구분없이 5학차 전체 재학생 중 각 1명씩 선발함.															

*1) 성적장학(C1~C3) 인원은 각 학기에 개설되는 분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<별표 2> 봉사장학금 지급기준

구 분	지급기준	지급액	구 분	지급기준	지급액
원우회 (신학대학원)	회장	수업료 100%	대의원	의장	1,000,000
	부회장	수업료 90%		부의장	600,000
	총무	수업료 70%		총무	500,000
	서기	수업료 50%		회계	400,000
	회계	수업료 50%	교수 추천	전임교수	500,000
	기획국장	수업료 30%		주임교수	500,000
	복지국장	수업료 30%		특수대학원장	500,000
	예배국장	수업료 30%		온라인수업지원	500,000
	경조사국장	수업료 30%		설교실습(TA)	100(1) / 140(2) / 170(3) / 50(신)
원우회 (특수대학원)	회장	1,000,000	반대표	신학대학원	500,000
	부회장	800,000	찬양단	신학대학원	500,000
	총무	800,000	예배위원	신학대학원	500,000

<별표 3> 외국인장학금 지급기준

항 목	구분	기 준	비고
외국인장학금 (학비감면)	외국인유학생	수업료 30 %	-
	외국인전담전공	매 학년도 지급기준에 따름	대학원장학위원회 심의
외국인장학금 (TOPIK장학)	외국인유학생	2급: 10% 3급: 15% 4급이상: 20%	- 졸업시까지 적용 - 외국인장학(학비감 면)과 중복하여 지 급 가능
	외국인전담전공 (전문·특수대학원)		
	외국인전담전공 (일반대학원)	3급(20%) 4급(30%) 5급(40%) 6급(50%)	

<별표 4> 백석리더십장학금 지급기준

항목	대학원	선발기준	장학금액(비율)
백석리더십 (입학금)	기독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	신학교육원, 신학원격평생교육원, 본교 학부(평생교육원), 대학원 출신 입학생	입학금 100%
	기독교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	석사에서 박사로 학위과정을 변경하는 재학생	
백석리더십(30)	특수대학원 (신학대학원, 문화예술대학원 제외)	신학교육원 출신 입학생	수업료 30%
	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	본교 학부(평생교육원), 신학원격평생교육원 출신 재학생	
백석리더십(50)	신학대학원, 문화예술대학원	신학교육원 출신 입학생	수업료 50%

<별표 5> 장학금 환수기준

구분		환수사유 발생일	환수금액	비고
장학금 과·오지급		장학금 지급 이후	전액 환수	-
학적변동 (제적, 자퇴 등) 및 수여자격 상실 등	일반학기제, 다학기제 (1,3학기)	학기 개시일 전	전액 환수	교외장학금 은 환수하지 아니함
		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	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	
		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	
		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	
		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	환수하지 아니함	
	다학기제 (2,4학기)	학기 개시일 전	전액 환수	
		학기 개시일에서 5일까지	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	
		학기 개시일에서 5일이 지난 날부터 9일까지	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	
		학기 개시일에서 9일이 지난 날부터 13일까지	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	
		학기 개시일에서 13일이 지난 날	환수하지 아니함	

*입학금 해당하는 장학금은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